

#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7차 센트럴파크 부부공동명의 안내문



계약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부부간 공동명의 변경 절차를 안내하오니,  
부부공동명의 변경을 희망하는 계약자님은 본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-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7차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.
-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동의하에 전매제한기간에도 증여가 가능합니다.
- 부부공동명의 변경 일정과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희망하시는 계약자께서는 해당 지정기간 내에 신청바랍니다.

## ■ 부부공동명의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(※ 모든 서류는 “본인 발급분” 이어야 합니다)

구분(절차)	접수처	구비서류
① 증여계약서 작성 후 검인 (동탄출장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부동산관리팀</li> <li>※ 증여인(원계약자) / 수증인(배우자) 중 1인 방문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증여인, 수증인 공통</li> <li>① 증여계약서</li> <li>② 공급계약서, 발코니확장 공급계약서, 유상업선 계약서 일체</li> <li>③ 주민등록등본 1부</li> <li>④ 신분증(증여인/수증인)</li> <li>⑤ 인감도장(증여인/수증인)</li> <li>⑥ (세대 분리시)가족관계증명서 1부</li> </ul>
② 전매 동의신청서 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7차 견본주택 (경기도 화성시 영천동862-1)</li> <li>• 2024년 01월 18일(목) ~ 21일(일), 10:00~16:00</li> <li>※ 증여자/수증자 본인 함께 방문(증여자 본인 필수, 수증자 위임 가능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증여인, 수증인 공통</li> <li>①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</li> <li>② 공급계약서</li> <li>• 증여인</li> <li>①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(배우자 인적사항 기재)</li> <li>② 주민등록등본 1부(전체 표시)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 등본추가</li> <li>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(전체 표시)</li> <li>④ 신분증</li> <li>⑤ 인감도장</li> <li>• 수증인</li> <li>① 인감증명서 1부</li> <li>② 신분증</li> <li>③ 인감도장</li> <li>④ (위임 시에만)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추가</li> </ul>
③ 전매사유심사 및 동의서 발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동탄사업단 보상판매부</li> <li>※ 시행사에서 대리 접수</li> <li>→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처리기간 3 ~ 4주 소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증인</li> <li>① 인감증명서 1부</li> <li>② 신분증</li> <li>③ 인감도장</li> <li>④ (위임 시에만)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추가</li> <li>• 분양권 전매동의서 및 분양권 전매동의신청서(견본주택에 양식 비치)</li> <li>※ 제증명서류(인감증명서 등)는 1개월 내 본인 발급분만 접수가능하며, 제출하는 제증명서류는 (LH 제출)을 기본으로 합니다.</li> </ul>
④ 권리의무승계서 작성 및 계약서 수령(견본주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LH에서 분양권 전매동의서 수령 후 계약자 방문 안내 예정</li> <li>•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계약서 수령(우편발송불가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추후 안내예정</li> </ul>

## ■ 유의사항

- ※ 증여인은 **위임 불가**입니다.
- ※ 견본주택 방문 시 현장 상황으로 인해 업무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.
- ※ 전매제한 기간에는 배우자 공동명의로만 변경(배우자 단독명의로의 변경은 제외)할 수 있으며, 부모/형제 등 배우자 외 다른 가족과의 공동명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 (주택법 시행령 제73조 4항에 의거)
- ※ 전매제한 기간에는 공동명의 변경 후 단독명의로의 재변경은 불가하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증여로 발생하는 세금 관련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고, 접수 후에는 취소가 제한됩니다.
- ※ 부부공동명의 변경으로 인한 대출, 세금 관련, 기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,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.
- ※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매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, 분양권 전매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.
- ※ 기타 문의 사항은 본사 번호(☎02-3468-7384,7782,7720), 견본주택 번호(☎1551-5727)로 문의 바랍니다.